

2010년도 서구청 종합감사 결과 보고



 仁川廣域市
<http://www.incheon.go.kr>

감사관실

2010년도 서구청 종합감사 결과 보고

I 감사결과

1. 총괄

가. 행정상 조치	-----	총 60건
- 시정	-----	28건
- 주의	-----	26건
- 개선 등	-----	5건
- 현지처분	-----	1건
나. 재정상 조치	-----	총 11건 481,734천 원
- 추징·회수	-----	7건 273,888천 원
- 감액·재시공	-----	3건 203,114천 원
다. 신분상 조치	-----	총 34명
- 징계	-----	1건 1명
- 훈계	-----	14건 33명
라. 수범사례	-----	12건
마. 제도개선 사항	-----	6건

2. 주요지적사항

인사분야 인사업무 부적정

1. 인사운영기본계획 및 동 계획의 심의방법 부적정

-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은 인사정책의 중요사항으로 인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마련된 기준등을 소속기관 전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기준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함에도,

-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는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보직관리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기준 없이 추상적·선언적 기준만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인사운영기본계획은 인사정책의 중요 사안임에도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의가 아닌 서면심의에 의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2.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 시험에 의한 승진임용을 제외한 5급 이하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등에 의해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등에 반영되지 못한 성과 및 능력이 있는 자를 발탁하여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성과 및 능력 등을 실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함에도,
-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2009.8.18.일자로 5급 1명을 4급으로 승진의결하면서 근무성적 등에 의해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승진후보자 서열에 연연하지 말고 업무능력 및 통솔능력 등을 감안하자는 부적절한 모두 발언에 따라 서열 4위의 자를 승진의결 하였고, 승진대상인원 1배수 이외의 자를 발탁하여 승진의결함에 있어 최종 서열에 이미 반영된 다면평가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1배수 이내의 자를 제척 하였으며, 징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이 도과된 1배수 이내의 자를 제척시키는 한편, 1배수 이외의 자를 발탁승진 의결함에 있어서도 실적이나 능력 등을 실증에 의해 검증하지 아니하고 승진 의결한 사실이 있음.

3. 교육훈련실시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실적 부족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토록 관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속 공무원이 승진임용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토록 한 사실이 있음.

인사분야 근무성적평정 관련업무 부적정

1.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 부적정

-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의 궐위 등으로 인하여 평정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직원의 근무실적 및 능력 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를 평정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이자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권자로 지정·운영하여야 함에도,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는 과장급인 지방5급 공무원에 대한 평정자를 지정·운영함에 있어,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인 국장 등으로 지정·운영하지 아니하고, 평정자를 차상급·상위 감독자인 부구청장으로 지정·운영한 사실이 있음

2. 전체서열 조정 부적정

- 근무성적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제출되면, 각 평정단위별 서열 및 평정등급(수·우·양·가), 평정점수에 따라 1차 전체서열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1차 전체서열을 정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은 첫째. 각 평정단위별 서열의 조정은 불가하고, 둘째. 평정등급군별로 순위를 정하되 평정점수에 의하고, 셋째. 평정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서열로 정하여야 함.
- 또한, 2차 전체서열을 정함에 있어서는 자체기준을 마련[예) 1. 현부서 재직기간(기여도) 2. 현직급 재직기간 3. 동일직군 재직기간]하여 그에 따라 서열을 정한 뒤,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평정단위별 서열의 조정이 없는 범위내에서 2차 전체서열 결과 동일 순위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고 그 밖에 업무성과

및 평정단위별 피평정자 분포비율 등을 참작하여 최종 서열을 정하여야 함에도,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는 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1·2차 전체서열을 정함에 있어, 평정단위별 평정등급 및 점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전체서열을 정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근평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평정단위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전체서열을 최종 결정한 사실이 있음

일반행정 **공무국외여행 위원회 운영 및 지원금 수령 부적정**

1.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긴박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2008년 43건 모두를 서면으로 심사하고 2009년도의 경우에도 3건을 서면심사 하는 등,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국외여행경비 지원금 수령 부적정

서구청 지역경제과에서는 국외여행경비를 지원받을 아무런 사유가 없는 업무관련 단체인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캄보디아 해외 농업기술 습득 및 세계농업 동향 파악을 위한 경비로 1명이 1,020,000원을 지원받아 국외여행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3. 국외여행결과 행정 반영 미흡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3조에 의하면 '여행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 및 수집된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선진기관에서 배운 경험을 시책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함.

일반행정 **'구정에 바란다' 제보민원에 관한 사항**

1. 보건소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사례

- 1) 치과의사, 치과진료 보조원, 보건지소장(모두 계약직)
 - 보건소(치과) 및 보건지소를 찾는 아이와 부모들에게 평소 불친절하고, 무시하는 듯한 언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민원야기
- 2) 접수창구 직원(정규직2, 인턴사원1)
 - 예방접종과 관련 문의를 하거나 점심시간에 건강진단수첩을 찾으러 온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한 언행 및 점심시간 종료 후 오도록 종용, 민원야기
- 3) 산후도우미 담당자(정규직) 및 모유수유 교실 강사(기간제)
 - 수차례에 걸쳐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언행으로 민원 야기

2. 위탁방역 입찰자격 부적정

- 서구 지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여름철 방역을 외주용역으로 발주하면서 (총 사업비 121백만원, 권역별 각 3개월)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연막차량 2대, 연막소독기 100kl/h 2대, 방역수 2명 이상, 1년간 공공기관 위탁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등으로 '기술, 인력, 장비 보유현황과 동일한 용역실적 보유자로 과다하게 중복 제한하여 민원야기

3.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신청 부당 거부 ⇒ 각 군, 구 사례 전파

- '하자보수이행증권' 발급 시 이행보증금의 소유자는 발주기관(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명의'를 변경하면 그 소유권이 '대표회의'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에 앞서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을 복사해 달라고 하였으나, 법령에 뚜렷한 조항이 없음에도 이를 복사하는 것은 물론, 열람하는 것조차도 '정보공개청구'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민원야기

예산회계 조달청 계약의뢰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법령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우선적인 적용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어 「조

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지계법의 개별법령에 해당되어 지계법 보다 우선 적용하여야 하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조달 구매를 의뢰하여야 할 경우가 없으므로(완전 자율화), 지자체에서 물품을 구매 할 경우에는 당연히 지계법을 우선 검토 및 적용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서구청 재무과에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규정에 따라 먼저 해당 사업부서의 수의계약 요구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1인 수의계약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하지 않다면 일반경쟁의 방법 등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우선 추진하여야 할 것을, 특허 등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의뢰한 위 건들에 대하여 특허 등 수의사유를 면밀히 판단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아무런 판단 없이 이를 조달수수료까지 지급하면서 1인 수의계약으로 조달청에 의뢰함으로써 계약부서의 당연 업무인 계약업무를 회피함은 물론 불필요한 조달수수료를 낭비한 사실이 있음.

예산회계 **검단3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등에 따르면, 도급금액 30억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 위 규정에 따르면 이 공사는 도급업체가 직접시공계획서를 서구청에 통

보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서구청(재무과)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또는 최소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아 위 공사의 직접시공 유무를 확인함은 물론, 하도급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 선금 및 대가의 하도급 직불 여부 등 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하도업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계약이후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받지 못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하도급관련사항과 선금 및 대가의 지급사항 등의 제반규정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직접시공미제출로 인하여 공사감독자가 성실히 제반사항을 감독할 수 있는 여지도 없게 함으로서 실제 3개의 하도급업체가 하도를 하였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최종 준공금 지출시 이를 확인하여 ‘하도급계약사항 미통보’, ‘직접시공계획서 미제출’의 사유로 행정처분만을 요구함으로서 이 공사의 이행에 있어서 공사감독을 소홀하게 한 사실이 있음.

예산회계 헬스기구 구매 부적정

- 서구청 재무과에서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계약을 추진 할 경우에는 우선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에서 열거한 지역 제한 등을 제한하여 견적입찰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재무과에서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복지회관 헬스장 운영에 따른 헬스기구 구입”(문화관광체육과-16036, 2009.11.6.)을 총금액 44,914,000원에 헬스기구 21종을 일괄 구매의뢰하자, 당초에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으로 판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서구지역 주민센터 등에 납품한 일반 헬스기구의 잦은 고장과 A/S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와 검단복지회관 헬스 트레이너 등의 구두 조언 등에 따라 제품의 우수성과

A/S의 적시성을 들어 인근지역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특정회사의 제품을 구입할 것이 타당하다는 재무과장의 구두지시로 사업부서에 조달청 구매와 1인 수의구매 물품을 구분하여 변경 의뢰하도록 구두로 통보한 후, 사업부서에서 변경 의뢰(문화관광체육과-17550, 2009.12.2.)하자 이를 근거로 일부는 조달물품으로 등재된 특정회사의 특정제품으로 구입하고, 특정회사의 제품이 조달청에 등재되지 않은 일부 품목은 1인 수의견적 제출 대상으로 처리하여 같은 특정회사 특정제품으로 구입함으로써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음.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관련업무 추진 부적정**

1.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업무 소홀

- 「검암동 515-1번지 외 1개소 주차장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07년도 3월에 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07년 12월 말에 입찰 공고하여 계약체결하고 착공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한 이후 예산을 사고이월시키는 과정에서 공사비만을 사고이월조치하고, 관급자재는 사고이월조치 하지 아니하고 71,733천원을 불용시키고 다음연도인 2008년도에 타용도로 편성된 예산에서 3천여만원이 증액된 관급자재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당초 준공 예정일인 '08. 2. 28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변경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08. 9월 공사재개 통보하여 '08.11.7 공사 완료.

2. 주차장부지(체비지) 관리 소홀에 따른 예산낭비

- 본 공사와 관련 9개월 동안 공사가 중지된 주요 사유로는 체비지내의 컨테이너박스 등 폐기물의 무단 방치에 기인한 것으로 주차장 조성실무부서인 교통행정과 체비지 관리부서인 도시개발과간 업무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공사전 폐기물처리용역비로 1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음.

3. 공사완료 후 관급자재 변경 요청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 본 공사와 관련하여 '08.11.7 공사를 기 완료하고 11월 18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08.11.26일 아스콘이 재생품이라는 이유로 일반품으로 교체한다는 공문을 결재하고 '08.11.27 조달청에 주문요청(3천여만원 증액)을 한 사항으로, 공사 진행 중 발견된 사항이라면 공사감독공무원이 재생품과 정품을 비교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완료 전에 실정보고 등의 조치 및 조달청에 변경주문 요청 하는 등 적법하게 계약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나,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히 재생품으로 설계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담당자가 자체 판단하여 아스콘협회에 주문하여 전시공케하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 서류를 변경하여 납품된 것처럼 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음.

공유재산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부적정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징수)제1항에 의하면,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건설과에서는 ○○○외 3인이 위 지번상에서 2007년 2월 1일부터 불법으로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무단점유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최소 1년에서 2년이 지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으며,
- 검단출장소에서는 ○○○외 1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변상금 부과시에는 무단점유지역의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점유 면적이 얼마인지 측량을 실시한 후 무단점유 면적에 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측량없이 변상금을 부과 하였으며, 또한 변상금을 부과 한 후에는 변상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함에도, 현재 감사시까지(2건, 23,949천원) 변상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조회 및 압류조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체납액 징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보조금 관

희망근로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하면, 희망근로사업은 주민생활 환경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 지역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 주민에 대한 편익이 지속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서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09년 희망근로사업을 실시 하면서 희망근로사업 실시 목적대로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환경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 지역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을 실시하여 일 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희망근로사업 실시 목적에 위배되는 희망근로 참여자 노고 위안 공연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110,649천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고용창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세외수입

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 소홀

- 「국고금관리법」 제15조에 의하면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면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 과목·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과오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과에서 2009.12.18일 각 세외수입 담당부서로 “세외수입 과오납금 미반환자 처리 요청(세무과-30749)” 공문을 발송하여

과오납금 미반환자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문화체육과 등 3개부서에서는 2000년부터 감사일 현재(2010.2.17)까지 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초과 납입된 과오납금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 결정 및 과오납부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경제분야 축산환경개선제(약품, 톱밥)지원사업 집행 소홀

매년 시 본청에서는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에 의거 축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군구에 예산지원하고 있음.

- 서구에서는 축산환경개선제(약품, 톱밥) 제품선정과 공급계획은 군구에서는 제품선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급희망업체로부터 제품의 품목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및 주요 성분분석 성적증명서를 제출받아 제품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축산농가 당사자가 임의로 제품을 선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품 공급업체에 사업비를 계좌입금토록 되어있음에도 축산농가에 직접 입금시켜주고 있음.
- 지원대상에 있어서도 돼지, 닭 사육농가를 중점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소 사육농가에 중점 지원하고 있어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경제분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업무 소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 (허가의 취소 등)에는 허가취소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 서구 지역경제과에서는 왕길동 209-1, 209-24번지에 민원인 ○○○가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도시개발과, 검단출장소, 종합건설본부, 보병제○○사단)에 협의결과 2008.1.7일 조건부 허가를 하였음
- 그러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허가취소 등 후속 조치에 소홀히 하였음.

지방세 분야

대도시내 법인 부동산 등록세 등 추징 소홀

- 지방세법 제1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3배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의 13개 법인의 경우 위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 됨에도, 서구청 세무과에서는 감사당일 현재까지 (주)○○○의 13개 법인에 대한 등록세 등 107,900천원을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지 아니하고 과세누락 한 사실이 있음.

토지분야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건축허가 부당처리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 후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당초 이용목적과 다른 개발행위 등의 인·허가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의 이용 목적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도시개발과(도시계획팀)에서는

주거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된 토지에 건축 허가(용도변경) 시 토지거래계약허가 부서와 이용목적 변경절차(협의) 없이 2009.11월부터 2009.12월 총 3건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건축허가(용도변경) 하여준 사실이 있음.

지적분야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관리 소홀

- 소관청은 지적측량의 편의를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그 측량성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지적측량기준점표지가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소관청 또는 공사가 각각 이를 재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하고, 또한 소관청은 공사와 합동으로 연1회 이상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지적도근성과표에 조사년월일, 조사자의 직위·성명 및 조사내용(망실유무, 사고원인, 경계의 부합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서구 토지정보과에서는 2009년분에 대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망실)를 하였으나 감사일 현재 까지 지적삼각보조점(82점), 도근점(289점)을 재설치 및 보수하지 않아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인(○○학원) 관리·감독 소홀

-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원법인으로 구분되며, 사회복지법인은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음.

1.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소홀

- 사회복지법인에 출현된 재산 즉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법인의 실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법인이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①해당기본재산의 성격, ②총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③처분 시 목적사업 수행 가능성 ④처분의 의도 ⑤처분 후 사용용도, ⑥구비서류 적정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수행한 후 신중하게 허가를 결정해야 하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등), 동 규칙15조(장기차입금액의 허가)를 보면,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¹⁾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청(군·구 및 시)에서는 ①이사회 의결정족수 및 회의록에 장기차입과 담보제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② 기본재산 담보제공시 공부상 현황을 대조 확인 후(지번, 면적, 개별공시지가 등)③참석이사 전원 인감날인 및 간인여부를 확인하고 상환계획의 타당성 여부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차입의 의도, 차입 후 법인의 정상 운영여부, 차입금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차입금의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인천서구 경서동 소재 사회복지 법인 ○○학원의 장기차입금 현황을 보면 95. 4. 26일 ○○학원을 설립하고(당시 법인의 기본재산 토지 22,290.m²/22억 상당), 50억의 장기차입금을 복지부로부터 승인(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연8%)받은 후, 96. 12. 30일 기본재산인 토지에 근저당(24억)을 설정한 후 ○○은행으로부터 11억47백만원의 대출을 받고 97.12.9 일 인천실버타운 건설을 위해(총 공사금액 83억) 기존 ○○은행 대출금(11억47백만원)과 어음발행 및 대표자 차입금등으로 실버타운을 건립하였으

1) 장기차입금이란 1년이상 차입하는부채를 의미 : (신규 장기차입금 + 기존 장기차입금) ≥ (기본재산총액 - 차입당시 부채총액) × 5/100

나, 99. 3.16일 부도로 실버타운 건물에 41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30억원의 대출을 받아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음.

- 2010년 2월 현재 채무상환액은 총 9,172,702,586원(신용보증기금 상환액 6,845,702,586원, ○○금고 외 채무자에 대한 상환액 2,327,000,000원)이고 미상환액은 총 2,583,297,414원(신용보증기금 754,297,414원, ○○금고 외 1,829,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법인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대출승인50억을 인정한다고 해도 97년 12월 9일에 준공된 인천실버타운의 총 공사비가 83억원으로 대부분 은행채무와 어음발행 등으로 자금을 모집했고 법인에서 주장하는 2010년 2월 현재 은행 등 채무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내역에도 총 9,172백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법인의 기본재산 100/5이상의 장기차입금에 대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사)관리 부 적정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기관이며, 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중임)할 수 있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충실하게 그 직무를 행해야하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정해지며 그 절차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법인의 임원선임(해임)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사회복지법인 ○○학원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하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이내에 선임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학원(대표 ○○○)의 경우 이사 ○○○(임기만료 2009. 11. 23), ○○○(임기만료 2008. 3. 28), ○○○(임기만료 2009. 11. 23)는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임기가 만료됐으나 신규위촉 및 연임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이를 방치한 사실이 있음.

3. 예산편성 및 결산 절차 미 이행

-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운영시설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작성하고, 예산안에 대해 이사회 의결 후 의결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전에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결산의 경우도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의결된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학원의 2008년도와 2009년도 및 2010년도 예산의 편성 및 결산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법인산하의 노인실버타운만 2008년도 본예산만 단 한번(2008. 1.4) 제출 했을 뿐 법인 및 산하시설(노인실버타운,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예산 및 결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노인실버타운 입소자 보증금 반환채무이행 보장 미 이행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항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 시설설치에 관한 특례다항에 의하면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1.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2.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이상 3.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4.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5. 보증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

접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실버타운의 경우 입소보증금 총 73명의 5,285,000천원(2007 : 33/2,310,000천원, 2008 : 15/1,620,000천원, 2009 : 25/1,355,000천원)을 채무상환으로 2,310,000천원을 기타운영비(급여, 시설비)로 198,000천원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사회복지 **조건부 수급자 관리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에 의하면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 함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하고,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임산부,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2009년도 자활사업안내 책자(P16)에 조건부 수급자(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를 중지하도록 되어있으며, 조건부 수급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조건부과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선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을 반영하되, 동종 사업종사자의 평균임금과 주거 및 생활실태 등을 감안한 "소득확인조사"를 거쳐 추정소득을 부과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조건부 수급자 선정

에 대해서는 분기 1회이상 근로능력 판단 및 조건부과 제외 등의 사유를 재확인 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인천서구청의 조건부 수급자의 조건유예결정 내역을 보면 가정동 515번지 000외 2명의 경우 의사소견서상에 3개월 치료 후 단순근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 1차로 유예자로 결정해주었으나 3개월이 지난뒤에 또다시 동일건으로 의사소견서를 첨부 유예자 신청을 하였으면 이때에는 진단의사의 면담기록부나 다른 의료기관(지방의료원 및 보건기관 포함)에 재진단을 의뢰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 확인등을 거쳐 유예자로 관리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동일병명으로 6개월에서 1년간 유예자로 계속 관리하는 등 조건부 수급자 관리를 소홀이한 사실이 있음.

청소분야

방치폐기물 처리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 방치폐기물 처리단가(예정가격)를 적용함에 있어 방치폐기물의 성상, 종류, 운반거리 등 처리방법이 다양하므로 환경부 고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폐합성수지 톤당 271천원)를 적용하지 않고 방치폐기물처리 가능자(소각시설 운영자)가 고시된 수수료 범위 내에서 결정·적용하므로 보편적으로 시장조사를 하여 견적가격의 최저가를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재무과에서는 경서동 486-1번지(국유지)에 야적되어 있는 방치폐기물(폐합성수지) 3,500톤을 처리함에 있어 2개 업체에게 폐기물처리 견적가격을 조사한 결과, 톤당 처리 비용으로 160천원 및 154천원으로 각각 조사되었으므로 저가인 톤당 처리비 154천원으로 예정가격으로 설계를 하였어야 하나, 톤당 3천원이 비싼 2개 업체의 평균 가격인 157천원/톤으로 예정가격을 정하고 2009.12.18 용역을 실시함에 따라 환경부 고시단가 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용역을 실시하였다 하나, 최저가 견적가격보다는 많게(약 10,500천원) 용역을 실시함

- 또한 청소행정과에서는 매년 서구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단투기폐기물(폐합성수지)을 처리함에 있어 동 폐기물처리 특성을 감안하여 처리 가능자(소각시설 운영자)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여 최저가의 견적가격을 적용·입찰하여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이를 조사하지 않고 환경부 고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폐합성수지 톤당 271천원)를 적용하여 2009.3.26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계약금 109,977,000원, 계약자 (주)○○○서비스> 함에 따라 견적가격 대비(무단투기 폐기물 톤당 견적가격 처리비 242천원으로 고시 단가보다 29천원이 저렴) 약 8,678천원(처리량 299.27톤)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함.

환경분야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 가입금액 부적정**

-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또는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 또는 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
- 환경보전과에서는 관내 왕길동 52-19, -20번지의 ○○산업개발(주)의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보험 가입을 갱신(2009.10.30)을 하면서 보험가입금액 50,569,500원에 가입하여야 하나 11,833,500원이 적은 38,736,000원에 가입하였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22개소 528,295,722원의 방치폐기물처리 이행 보증보험금을 적게 가입함.

전산통신

사이버 영어마을 구축 부적정

- 사이버 영어마을 홈페이지 구축함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구축 운영하여야 함에도 전산개발비로 26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사이버영어마을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164,150천원에 계약하고 사이버영어마을 홈페이지 화상교육 연간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82,750천원에 계약하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등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사업수행을 위한 착수계 제출시 참여인력 구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고급, 중급 기술자에 대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음.

녹지분야

수경시설 디자인 및 제작설치 부적정

1. 협상에 의한 계약 부적정

- 가좌근린공원내 예술성 있는 수경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도심의 경관 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재울 사거리의 랜드마크를 형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가좌근린공원내 수경시설 디자인 및 제작·설치를 위한 입찰을 함에 있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08.07.07)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입찰 공고시 그 참가자격을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조경공사업 관련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고 하였음.
 - 제안 입찰 공고 결과 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그중 1개의 업

체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아닌 일반건설업 면허 업체로서 마땅히 무효처리 하고 참가자격이 적합한 3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객관적·주관적 평가를 거쳐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와 계약 체결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일반건설업 면허 업체도 평가를 하였고, 동 업체가 최고 점수가 되자 이와 최종 계약 체결 시행하는 등 회계 질서를 문란 시킨 사실이 있음.

2.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 없이 시행

- 공원의 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13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 이행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변경절차 없이 공원내 새로운 시설인 수경시설(분수)을 설치한 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토목분야 다락방지구 도로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공사감독업무 담당공무원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현장설명서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서가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사를 수행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공사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서구 건설과에서는 다락방지구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2009. 12. 11일 기존암거 철거공란에 따른 보수보강, 자연석 쌓기, 옹벽휨스설치 등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으나, 동 설계변경 시 하수암거보수보강에 따른 하수암거(관급자재) 수량 감소분을 감액하지 않았으며, 일부구간의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옹벽 등 변경수량 및 이에 따른 자재비와 배수공에서 과다하게 반영된 연결밴드 등을 감액하지 않아 감사일 현재 75,425천원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토목분야 하수관거 정비공사(비굴착) 부적정

1. 신기술 공법 선정 불철저

- 하수관거 비굴착 보수를 위한 건설신기술이 2개 이상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도로상황·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현장 적용성, 이상항목과 손상정도에 대해 시공 가능한 시공성, 활용실적,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서구 건설과에서는 하수관거 비굴착 보수공사(3건)에 대한 신기술 공법을 비교·분석 없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등 신기술 공법 선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품질관리 소홀

- 하수관거 비굴착 보수 신기술 공법 시방서에 따르면 시공자는 시공된 보강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별도의 시편을 만들어 인장강도, 압축강도, 굴곡강도, 굽힘탄성율 항목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하수관거 비굴착 보수공사(2건) 시공사가 관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는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신기술 사후관리 소홀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5조에 따르면 신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신기술이 적용되어 준공된 하수관거 비굴착 보수공사(2건)에 대하여 준공된 지 1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사후평가서를 작성·보고하지 않는 등 신기술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건축분야 수의계약체결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정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포함한다)으로 체결한 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와 그 외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어도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
- 그러나 서구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연희지구 공원내 시설물 정비공사' 및 '석남체육공원 등 25개소 모래교체공사'에 대하여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 중 '연희지구 공원내 시설물 정비공사'에서는 야외무대 면적 산출 오류를 이유로 설계변경 함에 따라 7,961천원 상당을, '석남체육공원 등 25개소 모래교체공사'에서는 시방서 상에 교체해야할 새로운 모래를 어디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모래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 이상의 모래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상의 운반거리의 변경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음에도 운반거리를 변경 함에 따라 10,351천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설계변경 처리한 사실이 있음.
- 또한 계약부서에서는 공사 계약방법이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임을 사업부서에 안내함으로써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상기와 같이 부적정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어야하나 이러한 안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건축분야 건설공사 하도급심사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 중 100분의 30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하여야 하고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서구청 건축과에서는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건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급자인 ○○종합건설(주)로부터 위 현황과 같이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직접시공계획서 상에 직접시공 공종과 하도급(예정)공종에 미장공사가 중복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토목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인해 공사금액의 30%이상을 직접시공 하여야 하는 규정이 위배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는 등 하도급 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II

수범사례

우수시책 목록

연번	분야	제 목	부서명	비고
1	녹지	나무은행 가식장 조성	녹지경관과	녹지조경팀
2	“	가좌, 석남 완충녹지 조성사업 예산절감 추진	“	공원팀
3	광고물	불법유동광고물 특별정비반 운영	“	광고물팀
4	토지·지적	친환경다기능 도로표지판 설치	토지정보과	
5	“	도로명주소 안내도 개정판 제작	“	
6	보건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운영	보건소	건강증진과
7	“	모유사랑교실 확대운영	“	“
8	“	암의료비 지원사업의 포괄적인 연계	“	“
9	“	보건민원 콜센터 운영	“	보건행정과
10	“	허리건강 UP 요통운동교실 운영	“	“
11	“	『삶의 질 향상』 재활보건사업	“	“
12	“	모기 및 유충구제 신고센터 운영	“	“

※ 파란색 제목은 분야별 감사관 및 부서에서 추천한 우수시책입니다.

나무은행 가식장 조성

□ 사업배경

- 관내 각종 개발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지장수목 중 수형이 우수하고 재 활용이 가능한 수목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과 동시에 향후 각종 공원, 녹지대 등 조경사업에 사용하여 재료비(수목구입) 등 사업비 절감을 위한 나무은행 부지조성 및 확보 방안이 대두됨
- 우리 구 가정동 산21-1번지 내 국방부 사격장 이전에 따라 방치되고 무단 경작으로 주변 산자락까지 확대되어 산림훼손이 심각한 지역을 정비하고 토지매입비, 임대료 등 토지사용에 따른 비용없이 무상으로 이용코자 국방부와 협의를 하여 3년간 무상사용을 득하였음.
 ※ 무상사용(허가)기간 : 2009. 6. 20. ~ 2012. 6. 9.

□ 사업개요

- 사업명: 나무은행(가식장) 조성
- 위치: 서구 가정동 산21-1번지 일원
- 조성면적: 7,036㎡
- 소유자: 국유지(국방부)
- 사업기간: 2009. 4. ~ 2009. 11.
- 사업내용:
 - 토지무상대부 협의 : 국방부(국유재산과)
 - 나무은행운영을 위한 정비공사: 총 19,700천원(토지정비, 웬스설치공사)

<나무은행(가식장)조성 추진현황>

위치	조성면적(㎡)	보유·관리 수종	추진상황	비고
가정동 산21-1	7,036	느티나무 외 7종 3,330주	조성완료	
경서동 486-1	2,946	-	추진중	
공촌동 145-3외	2,800	-	추진중	

※ 추가적인 나무은행(가식장) 확보를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협의를 통해 3,000㎡ 이상 토지 무상사용 추진 중

<나무은행(가정동 산21-1) 이용현황>

수목이식	수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청라지구 도시계획시설 (광로24호선)조성에 따른 수목 이식	느티나무	근원직경(R) 18~45	54	주	
	메타세콰이아	흉고직경(B) 16~34	18	주	
	느릅나무	근원직경(R) 18~26	9	주	
	스트로브잣나무	근원직경(R) 6~18	52	주	
	해송	근원직경(R) 10~24	40	주	
	개나리	H1.2	500	주	
	사철나무	H1.2	700	주	
	귀퉁나무	H1.0	1,800	주	
청라지구 중봉로 가로수 이식	느티나무	근원직경(R) 28	79	주	
	메타세콰이아	흉고직경(B) 16	18	주	
관내 공원 수목 이식	스트로브잣나무	H2.0 × W1.0	60	주	
계			3,330	주	

□ 특이사항

○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예산절감

- 해당토지 재산가액 : $7,036\text{m}^2 \times 24,200\text{원}$ (2008년 공시지가) = 170,271,200원

- 연간 사용료 : $170,271,200\text{원} \times 50/1,000 = 8,513,560\text{원}$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1항 연간사용료 요율 적용
(연간사용료 1,000만원 미만시 보증금 예치 제외)

※ 3년간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임대료 25,540,680원 절감

□ 추진실적

- 2009. 3월 : 부지정비계획 수립
- 2009. 4월 : 농작물 제거 및 부지정비완료
- 2009. 5월 : 토지무상사용신청(구→국방부)
- 2009. 6월 : 토지무상사용 승인(국방부→구)
- 2009. 6월 : 산자락 훼손지 수목식재공사완료
- 2009.11월 : 가식장 활용을 위한 부지정비 및 느티나무 이식완료

□ 기대효과

-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수목의 이식장으로 활용
- 향후 공원 및 녹지사업시 수목 재활용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
- 양질의 수목 재배를 위한 관리 여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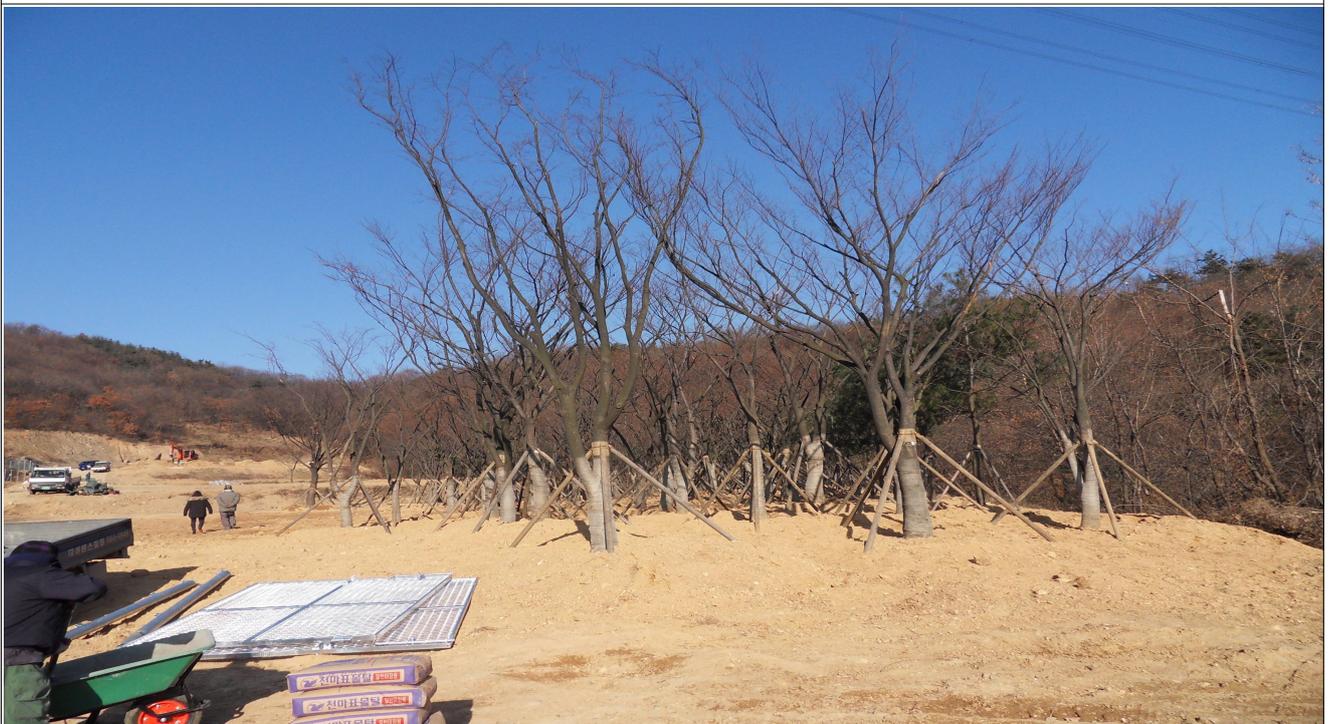
□ 위치도



□ 현황사진



가정동 산21-1번지 나무은행(가식장) 진경



이식수목 현황사진

가좌, 석남완충녹지 조성 사업 예산 절감 추진

□ 사업 개요

- 사업명 : 가좌, 석남완충녹지 조성 사업
- 위치 : 서구 가좌동 318번지, 석남동 219-1번지 일원
- 면적 : 가좌완충녹지 80,300㎡, 석남완충녹지 242,705㎡
- 사업내용 : 녹지내 조경수 식재, 편의 및 운동시설물 설치
- 사업비 : 가좌완충녹지 540억원 (보상 427, 공사113억원)
 석남완충녹지 883억원 (보상 674, 공사 209억원)
- ▷ 그동안 사업 추진 현황 (가좌녹지 : 66,290㎡완료, 조성율 83%)
- 2005. 10. 20 : 가좌완충녹지 1단계 조성 완료 (18,564㎡)
- 2007. 11. 22 : 가좌완충녹지 1-1단계 조성 완료 (25,737㎡)
- 2009. 09. 09 : 가좌완충녹지 2단계 조성 완료 (21,989㎡)
- ▷ 그동안 사업 추진 현황 (석남녹지 : 90,765㎡완료, 조성율 37%)
- 2004. 06. 14 : 석남완충녹지 1단계 조성 완료 (5,000㎡)
- 2006. 06. 30 : 석남완충녹지 1-1단계 조성 완료 (35,008㎡)
- 2009. 12. 15 : 석남완충녹지 2단계 조성 완료 (50,757㎡)

□ 사업비 절감 현황

사업명	공사비	사업비 절감액	비고
합계		○ 27.7억원 (가좌10, 석남17.7억원)	
가좌완충녹지 조성	12억원	○ 4.8억원 (수목1.9, 조경토2.8억원)	2007년도
“	16억원	○ 2.4억원 (수목2.4억원)	2008년도
“	18억원	○ 2.9억원 (수목2.9억원)	2009년도
소계	46억원	▷ 10억원 (수목7.2, 조경토2.8억원)	절감율 21%
석남완충녹지 조성	29억원	○ 5억원 (수목1, 조경토4억원)	2005년도
“	24억원	○ 2.3억원 (조경토2.3억원)	2007년도
“	27억원	○ 6.1억원 (수목3, 조경토3.1억원)	2008년도
“	28억원	○ 4.3억원 (수목4.3억원)	2009년도
소계	108억원	▷ 17.7억원 (수목8.3, 조경토9.4억원)	절감율 16%

□ 사업비 절감 내용

- 가좌, 석남완충녹지 사업 추진시 한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대량의 수목 확보가 쉽지 않고 사업이 많은 우리 시의 특성상 양질의 토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 비용 운반비를 지급해야 하는 바, 사업 착공전 재건축 현장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전 업무 협의를 거쳐 토사를 무대로 반입하였고, 관계기관(인천시, 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 협의를 거쳐 녹지내 식재될 수목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사업비 절감 및 지역기후에 기 적응된 수목 식재로 녹지 공간 확충과 조기 도시녹화 효과를 거양함

▷ 가좌완충녹지 사업 예산 절감 현황

- 2007년~2009년까지 예산 절감액 : 10억원
- 2007년도 사업 추진시 수목 무상 지원1.9억원, 토사 2.8억원
- 2008년도 사업 추진시 수목 무상 지원 2.4억원
- 2009년도 사업 추진시 수목 무상 지원 2.9억원

▷ 석남완충녹지 사업 예산 절감 현황

- 2005년~2009년까지 예산 절감액 : 17.7억원
- 2005년도 사업 추진시 수목 무상 지원 1억원, 토사무대 반입 4억원
- 2007년도 사업 추진시 토사 무대 반입 2.3억원
- 2008년도 사업 추진시 수목 무상 지원 3억원, 토사 무대 반입3.1억원
- 2009년도 사업 추진시 수목 무상 지원 4.3억원

불법유동광고물 특별정비반 운영

□ 사업 배경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개최지에 걸 맞는 도시환경 조성 및 노인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동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운영기간 : 2010. 3 ~ 2010. 12
- 운영구간 : 5개권역 간선도로변
- 운영인원 : 5개반 50명(모집공고에 의한 60세 이상 노인선발)
- 운영방법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계도, 반장 중심 운영체제 구축

□ 그동안 추진사항

- 세부계획수립 : 2009. 1. 20
- 참여자 모집공고 : 2009. 2. 1 ~ 2. 15
- 참여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장 배치 : 2009. 2. 16 ~ 2. 27
- 특별정비반 운영 : 2009년도
 - 권역별 5개반 50명

□ 2010년 추진계획

- 2010. 2. 12 : 세부계획 수립
- 2010. 2. 16 ~ 2. 25 : 모집인원 선발
- 2010. 3. 2 : 대상자 사업장 배치 및 사업시행
- 2010. 12. 31 : 사업 종료

□ 사업비 : 196,300천원(구비186,300)

- 인건비 : 187,500천원, 장비비 : 8,800천원

친환경 다기능 도로표지판 설치

□ 사업개요

- 인천 최초로 일반전기대신 Solar 충전방식을 활용하여 친환경 도로표지판 설치
- 저탄소 녹색성장의 친환경 청정에너지 활용
-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 및 선진화된 주소인프라 구축

□ 설치현황 : 5개소, 66,000천원

- 검단지역 2개소(28,050천원 : 완정사거리, 원당사거리)
- 석남동지역 3개소(37,950천원 : 석남제1고가교, 거북시장입구, 석남소방파출소입구)

※ 일조량이 부족할 경우 대비 태양열, 풍력 복합 충전방식 1개소 시범운영 : 원당사거리

□ 설치사례



□ 여론동향

- 구 홈페이지 및 “네이버” 등 사설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친환경도로 표지판 관련 구정칭찬 및 지역의 우수시책 상호 소개 등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

- 타 시, 군, 구로부터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 및 전화문의
- 주민들로부터 보다 많은 친환경 도로표지판 설치 지속요구

□ 2010년 추진계획

- 관내주요지점 5개소 설치예정(검암사거리, 심곡사거리, 건지사거리, 가재울사거리, 송학로·도요지로사거리)
- 내 용 : Solar 충전방식 {친환경 청정에너지(태양전지모듈)활용}
- 사업예산 : 71,000천원
- 주민호응도가 높은 친환경 다기능 도로표지판의 지속적 확대설치 예정

□ 기대효과

- 친환경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로 도시미관 개선 및 선진화된 주소인프라 구축
- 친환경 청정에너지 활용 및 도시미관의 실용성 증대
- 대표성 있는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새주소 사업 상징성 부각

서구 도로명주소 안내도 개정판 제작

□ 사업개요

- 2012년 새주소제도 본격시행 및 2010년 고지와 행정수요급증과 더불어 토지 이동, 건물 정보 등 각종 정보사항 변경 및 도로명주소를 표기한 개정판 안내도를 제작하여 현장업무 및 사업부서에 제공하고자 함

□ 제작내용

- 규 격(부 수)
 - 책자형 : 8절(265mm×380mm), 6,000부, (1/3,000)
 - 접지형 : 2절(450mm×600mm), 50,000부, (1/17,000)
- 소요예산 : 금92,736천원

□ 차별화된 안내도 수록내용

- 용도지역(주거, 상업, 녹지지역 등), 지도여백부분 주요문화재 및 건물 사진 삽입
- 개발사업지구현황
- 인천지하철2호선 예정선

□ 기대효과

- 2014년 도로명주소 범적주소 전환에 따른 실생활주소로의 조기 정착에 기여
- 행정능률제고 및 우편배달, 방문 등 생활편익 증대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운영

□ 개 요

취약지역 내 위치한 초등학교 1개소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치과 의사 및 치위생사가 학교 출장하여 학생들에게 예방서비스 위주의 계속 구강건강관리와 구강보건교육 실시

□ 설치 및 운영과정

- '09. 8. 17 : 설치학교 및 장소선정 (석남3동 천마초등학교 3층 33m²)
- '09. 9. 14 : 사용협약서 체결
- '09. 9. 23~10. 23 : 인테리어 공사, 장비 구입 및 설치
- '09. 11. 5 ~ : 개소 및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방학기간 제외)

□ 소요예산 : 40,160천원(국비:20,080천원, 시비:10,040천원, 구비:10,040천원)

□ 그동안의 운영현황

- 2009. 11. 5부터 보건소 치과의사 1인과 치위생사 2인이 주1회 출장검진 (09:30~16:00)
- 일 검진인원 : 15명
- 검진내용
 - 개인별 잇솔질 교육
 - 구강검진, 치아홈메우기, 치면세균막제거, 불소도포 등 예방서비스 제공
 - 초기 우식증 치료, 초기 잇몸병치료, 교환기 유치 발치 등 치료서비스 제공

□ 비용효과 산출

- 1학년 1반 학생 26명에 대한 검진 및 진료 후 치료비 산정해 본 결과 7백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전학년생인 646명에게 적용하면 174백만원의 서비스를 취약지역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임
- 또한 평생구강건강의 기틀 마련으로 향후에 발생하게 될 의료비를 절감하였다는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는 앞으로도 확대 되어야할 매우 효율적인 사업이라 판단됨



모유사랑교실 확대운영

□ 우수시책 내용

- 임산부에게 개인별 완전모유수유의 방해요인을 파악하여 1:1로 개별지도하여 어려움을 해결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함으로써 모유수유율 제고로 엄마와 아기의 건강증진을 도모
- 보건소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좌지역의 임산부를 위하여 “이동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

□ 추진내용

- 교육기간 : 2008년 1월 ~ 2009년 8월
 - 서구보건소 :매주 수요일 / 9시~ 12시
 - 검단지소 : 매주 목요일 / 9시~ 12시
 - 나은병원 : 매주월요일 / 10시~12시

□ 교육 횟수 및 참석인원

년도	2008년	2009년	비고
실적	196회/1,806명	97회/940명	※ 2009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위해 교육 중단

□ 교육내용

- 수유부
 - 수유법 지도, 유두혼란 교정, 유방울혈시 마사지 염증치료(약물도포), 자기관리법 지도 (기저부마사지, 유두, 유륜부 마사지 등) 의뢰
- 임신부
 - 유방 자기관리법 지도 (유두, 유륜부 마사지, 기저부 마사지, 올리브습포, 유두단련법 등)

□ 추진결과 : 완전모유수유율 향상

- 생후 6개월이상된 영유아 172명의 모유수유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 참석자에 대한 완전모유수유 지속율은 56%로 비참석자 44%보다 높게 나타남

암의료비 지원사업의 포괄적인 연계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 소아·아동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 암환자
-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진단받은 암환자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적용기준 이하인 폐암환자

□ 지원내용: 암 치료비 및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

□ 암의료비 지원실적

	2008년			2009년		
	등록인원 (명)	지원인원 (명)	지원금액(원)	등록인원 (명)	지원인원 (명)	지원금액(원)
성인암치료비	194	326	148,599,110	194	344	164,587,770
소아암치료비	17	45	114,200,890	21	66	156,425,030
폐암치료비	61	66	77,000,000	52	52	57,000,000

□ 타 기관 및 보건사업 연계

○ 보건소 내부 연계

- 말기 암환자 통증완화 위해 재가암 관리 담당자와 연계하여 재가암 환자 등록 및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 및 방문간호사, 암 조기검진 담당자와 연계하여 사업 안내

○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생활지원과 및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암 환자 발견 및 등록 홍보
- 긴급지원을 요하는 대상자에게 긴급지원사업 안내 설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대상자 관리

○ 관내 의료기관

- 조기암검진 담당자와 연계하여 암 환자 발견 및 보건소 의료비 지원 등록 안내
- 병·의원과 협조체계 유지하여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

□ 기대효과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계의 심리·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율 제고.
- 암으로 인한 고통외에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 향상

보건민원 콜센터 운영

□ 추진개요

- 보건소 대표번호(5010, 5040)로 체계화된 보건행정 민원 상담
- 전염병(신종플루등)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한 발빠른 상담 서비스제공

□ 추진실적

- 운영일시 : 2009. 11. 9 ~
- 운영회선 및 장소 : 총 5대, 4층 보건상담실
- 운영요원 : 5명 (공익근무요원 및 자활근로자)
- 2009년도 운영실적 : 4,124건
 - 신종플루 및 예방접종 : 2,824건, 진료등 민원상담 1,300건
 - 예산액 : 금3,000천원
 - 헤드셋, 책상의자구입, 통신관리팀 전화설치협조
- 2010년도 운영실적 : 8,231건
- 관련사진



□ 기대효과

- 대표전화(5010, 5040)를 통한 신속한 보건민원 상담안내로 보건행정서비스 제공 및 신뢰받는 보건행정 확립

허리건강 UP 요통운동교실 운영

□ 추진개요

- 요통 원인 및 질환에 대한 정보와 치료방법 교육
- 질병에 대한 대응·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추진실적

- 기 간 : 2009. 6. 22 ~ 7. 3
- 장 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 대 상 : 허리통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지역주민
- 교육인원 : 105명
- 교육강사 : 물리치료학과 교수(가천의과대학 최원호 교수)
- 교육방법 : 체형에 따른 자가진단 및 관리, 척추병변의 이해
스위스볼을 이용한 요추부 안정화 훈련(정적)
토그를 이용한 요추부 안정화 훈련(동적)

○ 관련사진



스위스볼을 이용한 요통운동



요통 자가 운동

□ 기대효과

- 허리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요통에 대한 정확한 교육 및 정보제공으로 요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합병증을 예방함으로써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도모

『삶의 질 향상』 재활보건의사업

□ 추진개요

- 장애우를 조기 발굴·치료하여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 물리치료를 통해 환자 개개인에 맞게 기능 회복 유도

□ 추진실적

- 기 간 : 2009. 3월 ~ 12월(매주 화·수요일)
- 장 소 : 보건소 물리치료실
- 대 상 : 재활훈련이 필요한 뇌 병변, 지체 장애우 등
- 인 원 : 213명
- 운영방법
 - 장애 정도 평가후 3개월 재활치료(주 2회)
- 치료내용
 - 대상자 1인 50분 이상 재활운동(주 2회 치료)
 - 재활치료평가의 진단 후 치료방향 제시
 - 운동 전·후 비교평가

〈관련사진〉



재활보건의사업

□ 기대효과

- 노인인구 증가와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후천적 장애요인이 증가됨에 따라 재활물리치료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의 기회 제공

모기 및 유충구제 신고센터 운영

□ 추진개요

- 모기 산란장소가 유충의 서식장소로써 모기성충의 발생원인을 감안, 산란장소의 차단을 통하여 성충모기의 발생 억제
- 직접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말라리아에 대한 질병상담 및 질병에 대한 인식 고취

□ 추진실적

- 모기 및 유충구제 신고센터 구성·운영
- 유충구제 방역반 구성 : 질병관리팀장의 4명
- 홍보방법 :
 - 보건소 홈페이지 신고센터 병행 운영
 - 구정신문 : 1회 게재
 - LED 전광판 자막 홍보 : 2009. 4. 1 ~ 11.30
 - 버스 안내 방송 : 2009. 4. 1 ~ 11.30
- 처리실적 : 총 105건

□ 기대효과

- 말라리아 잠재·위험지역 주민들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사업을 통하여 말라리아 환자 발생 감소 및 건강한 사회구현